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서울시 영세자영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- 「2016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」
(자금지원팀-152, '15.12.31.)

2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대상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형 여성기업 가. 지역건강보험료가 77,300원 미만인 여성자영업자(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평균) 나. 모자가정의 가장 또는 여성가장이 대표자인 기업 	삭 제

3. 시행일 : 2016년 1월 4일(월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 임 : 1. 「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 2. 「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 3. 「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 전산지원부장

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4 (2016.01.05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